

의안번호	2218916
의 퇴 인	이준석의원
회 답 일	2026.9.11.
추 계 번호	26D2577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4조제5항·제6항(정보자원 통합관리)	－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하여야 하고, 이 경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(이하 “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”라 함)와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센터(이하 “재해복구 데이터센터”라 함)로 구분하여 구축하여야 함(제5항) －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(제6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4조제5항·제6항(정보자원 통합관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등(안 제54조 제5항 및 제6항)

- 개정안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도록 하고,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함

-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4월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」를 제정하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
 - 해당 고시에서는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 지정, 등급별 복구 목표 시간, 보조시스템 구축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

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」

제5조(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)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0조의3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.

1. A1 등급 :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, 안전, 재산 등에 밀접히 관련되어 가장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
2. A2 등급 :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중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,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대국민 필수 정보시스템
3. A3 등급 :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정보시스템 중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많고,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행정 중요 정보시스템
4. A4 등급 : 국민의 일상적 편의 제공 또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일반 정보시스템

<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」 [별표 10] 재해복구시스템(DR) 구축 기준 >

구분	재해복구 목표	구축 방식 예시	구축 방식 상세 설명
A1등급	RTO*: 실시간~1시간 내 RPO**: 0(실시간)	Active-Active ※ 재해복구 목표를 충족할 수 있으면 Active-Standby로 구축 가능	·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을 주 시스템과 다른 데이터센터에 미리 구성 · 주 시스템과 보조 시스템에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
A2등급	RTO : 3~12시간 내 RPO : 수 분	Active-Standby	·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을 주 시스템과 다른 데이터센터에 미리 구성 · 주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조 시스템에 동기화하여 주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시 신속하게 보조 시스템으로 대체
A3등급	RTO : 1~5일 내 RPO : 수 분	스토리지 DR	·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은 미 구성 · 주 시스템의 데이터만 다른 데이터센터에 실시간으로 동기화(복제)해 두었다가 주 시스템 중단 시 정보자원을 새로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※ 재해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환경을 사전 구성

구분	재해복구 목표	구축 방식 예시	구축 방식 상세 설명
A4등급	RTO : 3주 內 RPO : 1~7일	원격지 소산 ※ 원격지 소산을 재 해복구 용도로 활용 하는 경우 RPO를 고 려하여 온라인 소산 권고	· 주 시스템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 한 보존매체를 원격지에 소산하여 보관 · 재난·재해 발생으로 주 시스템이 파괴· 손상된 경우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하 여 복구(백업 주기에 따라 일부 데이터 손실 가능)
※ 기관별로 시스템 구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재해복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축 방식을 선택하여 구축하되, 최대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* RTO(Recovery Time Objective) : 복구시간목표(핵심 기능 기준) ** RPO(Recovery Point Objective) : 복구시점목표			

-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“범정부 이중 운영시스템 구
축”, “스토리지 DR(재해복구) 구축” 등의 내역사업을 추진 중임

<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 편성 내역>

세부사업	내역사업	산출내역
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(정보화) (2036-507)	범정부 이중 운영시스템 구축	·252,332백만원 -대전센터 이전 ISP: 1,500백만원 -범정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ISP: 38,786백만원 -서버 이중화 DR 구축: 212,036백만원
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(정보화) (2036-503)	스토리지 DR (재해복구) 구축	·이중 운영체계 구축: 87,992백만원

자료: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장애 발생시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즉시 보조시스템
가동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
예상되나,
- 현재 개정안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해
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
하기 위한 사업을 현행법령 및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
고시」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추진 중에 있으므로, 개정안 시행
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분리하여 추정하기가 곤란하여
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」 기

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별 DR(재해복구) 수준을 다르게 구축하는 경우
예상되는 소요비용은 약 2조 9,300억원으로 추정됨

<정보시스템 등급별 구분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비용 추정>

구분	구축 방식(예시)	시스템 수(개)	평균 구축 비용*(억원)	합계(억원)
A1등급	Active-Active	73	165.8	12,103
A2등급	Active-Standby	157	31.5	4,946
A3등급	스토리지 DR	671	7.8	5,234
A4등급	원격지 백업·소산	14,132	0.5	7,066
합계		15,033	-	29,349

* '26~'27 정부 예산안 기준 등급별 DR 구축 비용 평균단가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